

## 1 추진 배경

- 보험회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, GA의 부실 내부 통제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(예. 부당 승환)가 지속되고 있으며,
  - GA가 불법 私금융에 가담하거나 각종 컨설팅(세무·회계·노무 등)을 빙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질서 문란행위도 잇따라 발생

## 《 최근 GA發 시장질서 문란행위(예시) 》

- ① [정책자금 대출 관련 부당 보험영업(25.12월)] GA가 중소기업 등이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대출컨설팅을 제공하는 대가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
- ② [요양급여 부정수급 조장(26.4월)] GA가 요양기관에 접근해 세무컨설팅을 빌미로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여 해약환급금을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전용(국고보조금 편취)토록 조장

- ▶ GA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GA의 업무범위, 영업 행위, 제재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

## 2 GA 감독 강화방안

## 1 GA 업무범위 조정

- (문제점) GA가 각종 컨설팅,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고가(高價)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,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불건전 보험영업이 빈번
- (개선방향) GA의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\*하는 등 소비자 오인이 야기되지 않도록 개선

\* <현행 겸영금지> 다단계판매업,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

<추가 겸영금지(예시)> ①세무, 회계, 노무, 정책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업무, ② GA의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무

## 2 GA에 대한 제재 강화

- **(문제점)** GA가 제재처분(등록취소 등)을 회피하기 위해 소관계약을 他 GA에 이관하고 임직원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
  - 위법사실 통지를 받은 GA 퇴직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他 GA로 이직하여 보험영업을 지속
- **(개선방향)** GA의 제재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원칙적 금지하고, 재직 중 위규행위 저지른 GA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보험회사 퇴직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'퇴직자 상당 통보제도'를 준용토록 개선

## 3 GA 영업행위 규율 강화

- **(문제점)** GA가 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,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현행 법령 상 제재 어려움
  - 아울러 GA가 법상 금지된 '금품' 외에 용역(예. 경영컨설팅)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변칙적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발생
- **(개선방향)** GA가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, 방조, 관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을 검토하고, 他 법규 사례 등을 참고하여 특별이익 대상 명확화\*
  - \*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제공,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

## 4 GA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

- **(문제점)** 보험회사의 과도한 사업비 부과·집행, GA의 高수수료·高시책 상품 밀어내기식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발생
- **(개선방향)**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"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"(26.7월 시행)의 차질 없는 이행

### [참고]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주요내용

- (先지급 한도, '27.1월 시행) 先지급 제한을 위해 지급 한도 설정(계약체결비용 한도內)
- (분급 확대, '27.1월 시행) 최대 7년간(1단계 4년)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 신설
- (1,200%를, '26.7월 시행) 초년도 수수료 제한(1,200%)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